

제 16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71 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본 시설의 입소정원 및 대상,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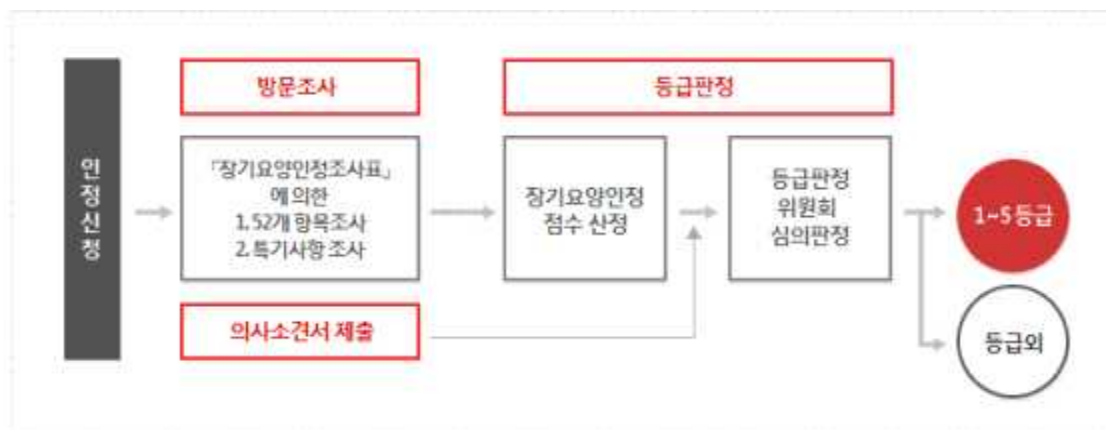
- ① 입소정원 : 74명
- ②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입소 대상은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¹⁾
- ③ 모집방법 :
 - 입소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본 원의 홈페이지, 군청 및 공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각종 언론, 입소자(보호자)들의 구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자격을 갖춘 어르신은 정원 내에서는 누구나 입소 가능하다. 단 전염병 질환등의 기타 어르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르신 제외
 - 정원 초과 시에는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 72 조 【 제출서류 】

본 시설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①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
- ② 표준이용계약서 사본 1부
- ③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 여부확인용)
- ④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⑤ 입소동의서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급판정 절차



1)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제 73 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소 계약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과 입소당사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기간인 1년 혹은 등급 인정 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③ 계약대상자 - 입소당사자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손녀)
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 손자부, 손녀사위)
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군수, 면장, 이장을 통하여 입소 계약이 가능하다.
- ④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 74 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있다.

-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경감대상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60% 또는 40% 경감

② 요양급여 비용

장기요양 등 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30일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30일 기준)			
			일 반 (20% 부담)	감경대상자		기 초 수급자
				(12% 부담)	(8% 부담)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335,050	223,370	면제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3,4,5등급 (시설등급)	81,540	2,446,200	489,240	293,530	195,700	

※ 등급별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매년 고시금액)에 의거 산정한다.

③ 서비스의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프로그램, 재활및 운동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④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

- 위 ③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별도로 없음

⑤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

- 식재료비 (1일 3식)-(일 7,500 - 월(30일기준)225,000 / 간식비 포함)

(※ 직원가족은 식사비 면제)

- 계약의사 진료비

구 분	진료비 (1회당)	본인부담비용		
		일반(20%)	경감(12%)	경감(8%)
초 진	18,840	3,760	2,260	1,500
재 진	13,370	2,670	1,600	1,060

※ 계약의사 진료비는 시설에서 수납 후 계약의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⑥ 이용료 등 수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해당 월 이용료를 익월 후불로 청구하며, 청구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한다.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원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일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⑦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면회

- 면회는 수급자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

1) 면회 시간은 10:00부터 16:30까지로 제한한다.

- 2) 면회는 생활실에서 가능하나 많은 인원은 면회실에서 실시한다.
- 3) 면회 시에는 생활실 내부로의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한다. 단 면회실 및 식당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⑨ 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 시는 항상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외출을 원할 경우 본원에 외출의 목적과 장소, 연락처를 명확히 알리고 외출대장을 작성 후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 2) 외박을 원할 경우 본원에 외박의 목적과 기간, 장소, 연락처를 알리고 외박대장을 작성 후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 3) 본원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5 조 【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시설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 등급의 변경 시 이용료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가의 변경 시 이용료 변경
- 식재료 인상으로 인해 식재료비 인상 변경 가능
- 프로그램 진행비 등 기관에서 정한 기타 사항 비급여 신설 및 비용 변경 가능

② 이용료의 개정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이용료 변경에 관한 방법

- 비급여 부분에서 이용료 변경 시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통해서 이용료 인상.인하 가능
-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급여 부분 비용 신설 가능(관련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수가 제외)

④ 이용료 변경에 관한 절차

- 이용료 변경(사안에 따라 행정협의회 의결)
- 이용료 변경 시 입소자 및 보호자 변경 내용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
- 입소자 및 보호자 이용료 납부

제 76 조 【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든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7 조 【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입소자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②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78 조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질 높은 요양 및 신체수발 서비스 제공의 의무
-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 ③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제 79 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 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80 조 【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적절 행동과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억제대,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을 위한 신체일부 구속 포함된다.
 - 집중관찰 ·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 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 대상자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특별보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 ②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요양보호를 위한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 단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는 입원비는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81 조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의료협약기관

-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1399(응급의료정보센터/WWW.1399.or.kr)에 자문을 얻어 응급처치 시행 후 신속하게 응급이송차량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제 82 조 【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1회 연체 시 : 이용료 납부 사실 통보
 - 2회 연체 시 : 이용료 납부 독촉
 - 3회 연체 시 : 계약 해지
-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 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기타 시설이나 혹은 타 어르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제 83 조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 ① 서비스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② 서비스제공 직원이 고의로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배상하도록 한다.
- ③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범위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또는 갑작스런 돌연사를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시설의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인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예외)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나 화재를 당했거나 사고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입소자 또는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본 요양원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실, 훼손 되었을 때
- ⑥ 지극히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케어서비스 중에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발생한 골절 등의 사고 등은 요양보호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84 조 【 금지행위 】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 ①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②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 ④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 ⑤ 음식물등 반입금지물로 인해 다른 어르신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 85 조 【 입소물품 】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공동생활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반입 시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위험물품(망치, 칼, 가위, 바늘 등)은 소유할 수 없다.

제 86 조 【 시설물관리 】

시설물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벽, 기둥, 바닥, 보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 ②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정기적으로 시설의 원내·외 시설물 관리 점검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④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소독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 ⑤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도 항상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며 시설물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조치하도록 한다.

제 87 조 【 시설물 주의사항 】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시설물 사용 시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심야 보일러설비(1층 보일러실), 기계설비(옥상 변전실, 소방용수설비, 물탱크 설비) 및, 정화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1층은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 ③ 입소자는 본 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88 조 【 위험방지와 보건위생 】

직원은 위험 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① (규칙 준수)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 ② (재해 방지) 항상 직장의 정리 정돈을 하고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 ③ (시설 변경 금지) 안전장치, 소화 설비, 위생 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④ (작업 준수) 업무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 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업무 중에는 소정 작업 동작, 공정 방법을 엄수 할 것
- ⑤ (화기 엄금)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 ⑥ (청 결)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분리, 처리 할 것
- ⑦ (후 생)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검사,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 89 조 【 퇴소절차 】

퇴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 ②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 ③ 본 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 ④ 입소보증금은 입소 시 보증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해당사항이 없다.